

하나은행 일정 및 주요사항

하나은행 일정 및 주요사항

대전하늘채 스카이엔2차 중도금 대출서류 자서일정과 관련하여 고객님의 대기시간 축소 및 현장의 혼잡을 방지하고 원활한 서류접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일자별 동호수를 지정하여 업무처리 예정입니다.

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일정을 확인하시어 방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방문일자	6/9(목)	6/10(금)	6/13(월)	6/14(화)
대전지점	204동 14층 ~ 22층	204동 23층 ~ 31층	204동 32층 ~ 40층	204동 41층 ~ 47층
대전영업부	205동 3층 ~ 10층		205동 11층 ~ 18층	205동 19층 ~ 26층
대흥동지점	205동 27층 ~ 32층	205동 33층 ~ 38층	205동 39층 ~ 44층	205동 45층 ~ 49층

- 대출 서류 접수시 본인 및 공동명의인 방문 필수.
- 모든 대출서류는 최근 1개월 내 발급분만 인정가능.
- 자세한 대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.

하나은행 대전지점 042-252-7800
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042-538-1111
 하나은행 대전지점 042-253-1111

대전 하늘채 스카이엔 II 아파트 중도금대출 신청 안내

하나금융그룹

※ 중도금대출은 많은 세대가 동시에 신청하므로 안내사항을 숙지해 주시기 바라며, 지정된 접수 일정에 따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● 중도금대출 일반사항

구분	내용
대출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약금 완납한 분양계약자[단,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한 자/ 기 보증포함 5억이내] •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건수 세대당 1건 이내 제한 (1 회차부터 신청하실분만 방문/ 2 회차 이후 신청자는 납입일 1개월이내 해당영업점 방문접수) • 무주택세대 또는 세대합산 1주택보유고객 (신청일 현재 중도금대출 보유고객 및 2주택이상 보유세대 대출불가) - 2020.06.17 부동산대책 : (지역불문)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가 규제 지역내 신규 아파트 분양권에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신규 아파트의 소유권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6개월이내 기존 주택 처분 및 6개월이내 신규 주택 전입한다는 약정 체결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.
접수안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접수일자 : 2022.06.09(목) ~ 2022.06.14(화) 09:30 ~ 15:30 • 접수장소 : 하나은행 대전지점(204 동), 대전영업부(205 동 3층~26층), 대흥동지점(205 동 27층~49층)
실행지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하나은행 대전지점, 대전영업부, 대흥동지점.
대출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세대별 40% 범위 내 (서민 실수요자 50%이내)
대출금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 4.46% [2022.05.18 현재, 기준금리 1.84% (신규 COFIX 6개월변동) + 가산금리 2.62%] • 상기 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이며, 회차별 대출실행일 현재의 기준금리 (신규COFIX 6개월)에 따라 최종금리가 확정되며, 선택하신 변동주기(6개월)에 따라 변동됩니다. - COFIX금리는 매월 15일 은행연합회(www.kfb.or.kr)에 공시됩니다. • 중도금대출 이자(후불제), 보증료는 분양계약자 부담임. *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%입니다. * 연체이자율[대출이자율+연체가산이자율(연3%)] : 최고 연 15%입니다. * 이자의 부과시기: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합니다.
대출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25년 7월 31일 (입주지정일 + 3개월 / 단,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만기일 이내) → 입주지정일이 단축될 경우 대출만기도 단축될 수 있음.
중도상환 해약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없음. 단, 은행 변경을 목적으로 대환하는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정상 징구합니다.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0.7% x (대출잔여일수 / 대출기간)
대출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류 접수시에 하나은행 본인 계좌 입금 및 잔고 유지 요망 - [계약자부담] 인지세 : 대출금액 1억원 초과 75,000원, 5천초과~1억원 이하 35,000원 - [계약자부담] 보증료 :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액의 연 0.13% (보증료 할인대상은 첨부 참조)
기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객님의 신용도 및 당행 대출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• 대출만기 도래시에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, 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• 대출 실행시 여신 부적격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거절 대상에 해당될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 • 여신 부적격자 : 신용관리대상자, 고의로 허위·위변조 등 부실 자료를 제출한 자, 당행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 자, 특수채권 보유자,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및 지급보증 대지급금 보유자, 당행 심사 부적격자, 신용등급 (KCB) 530점 미만인 자 등 •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영업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 **중도금대출 실행일정**

1 회차	2 회차	3 회차	4 회차	5 회차
2022.07.11	2023.01.10	2024.02.12	2024.06.10	2024.11.11

● **대출서류 접수 일정**

☞ 06.9(목요일)~06.14(화요일) ◀[해당영업점 방문 09:30~15:30] 서류 접수, 통장개설 신청 등

- ① 주택보유수 유, 무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등본 기준 성년 세대원 동의필수 (방문 또는 SMS)
- ② 대출신청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반드시 본인이 오셔야합니다(대리인불가)
- ③ 입출금통장개설, 인터넷뱅킹 신청 등이 동시 진행됩니다
- ④ 신청서류는 준비서류를 참조하세요
- ⑤ 동별 접수일정

방문일자	목요일(6.9)	금요일(6.10)	월요일(6.13)	화요일(6.14)
대전지점	204 동 14 층~22 층	204 동 23 층~31 층	204 동 32 층~40 층	204 동 41 층~47 층
대전영업부	205 동 3 층~10 층		205 동 11 층~18 층	205 동 19 층~26 층
대흥동지점	205 동 27 층~32 층	205 동 33 층~38 층	205 동 39 층~44 층	205 동 45 층~49 층

● **중도금 대출 신청 및 심사, 실행 일정**

일 자	내 용
2022.06.14(화)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① 비대면 계좌 개설 ② 하나은행 스마트폰뱅킹(하나 1Q)가입을 완료 하셔야 합니다. ☞ 비대면 계좌 개설, 하나은행 스마트폰뱅킹(하나 1Q)가입은 공휴일에도 가능합니다. ☞비대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세대는 대출 신청 전에 하나은행 가까운지점을 방문하시어 계좌 개설, 하나은행 스마트폰뱅킹(하나 1Q)을 가입하셔야 합니다. • 비대면 계좌개설 QR 코드 이용 안내 (첨부 매뉴얼 참조)
2022.06.09 ~ 2022.06.1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모바일대출 신청 및 약정 ①계좌개설 및 하나은행스마트폰뱅킹 가입 후 스마트폰으로 중도금 대출 신청 ②은행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 ③대출신청 서류를 지참하시고 반드시 본인이 오셔야 합니다. ④공동명의세대는 모바일 대출 신청이 불가하여, 현장에서 대출서류를 자필 작성하셔야 합니다. (대리인 작성 불가)
2022.07.07 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증료 및 인지세(수입인지대금)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. - 인지세 : 1 억초과 75,000 원, 5 천초과~1 억이하 35,000 원 - 보증료 : 평형별, 기준층별 상이 (은행직원 안내드립니다)
2022.07.07 까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도금대출 심사 및 부결 통보 분양계약자별 보증서 발급 및 대출가능 여부 심사후 대출 불가시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.
2022.07.1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 회차 중도금 대출 실행

● **대출서류 접수시 사전 준비사항 및 주의사항 안내**

- 2022년 6월 14일까지 대출 비용(인지세, 보증료) 납부용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. (첨부참조)
(기존 계좌 보유자도 신규 개설 요망)
- 중도금대출 신청은 모바일뱅킹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이루어집니다.
- 공동명의계약세대의 경우에는 모바일(인터넷) 대출 신청이 불가하며, 대출서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.
- 대리인 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. (공동명의 계약세대는 공동명의인 모두 방문하셔야 합니다)

● **준비서류 (모든 서류 필수 제출 - 1개월내 발급분)**

☞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전원이 각각 구비서류 준비하여 방문 및 주민번호 모두 표시

공통서류	소득 증빙 서류	
① 분양계약서원본, 계약금납입영수증 ☞ 전매한 경우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필증 ② 신분증 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☞ 주민번호 및 가족관계 표시 ☞ 분리세대는 각각 제출 ④ 전세대원 주민등록초본 1부 필수 (과거 주소 포함) ☞ 전세대원 필수(미성년자 포함) ☞ 분리세대는 각각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 ⑥ 기본증명서(상세) ☞ 주민등록등본상에 미성년자 세대원 있을 경우 미성년자 기준으로 각각 발급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전체이력) ☞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1577-1000 전화 후 팩스 수령 ☞ 공동계약자는 공동명의인 포함 ⑧ 소득증빙자료 (우측 참조)	직장인	① 재직증명서 ② 최근 2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- 취업(복직) 1년 미만 : 취업(복직) 후 급여명세표 전부 - 현재 휴직자 : 휴직 전 1년간 급여명세표 ☞ 모든 서류는 회사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.
	자영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② 소득금액증명원 (최근 2개년) - 개업 1년 미만 : 소득신고없음 사실증명서(세무서 발급) +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(최근 3개월이상)
	연금소득자	① 연금수급증서 ② 연금입금 계좌 거래내역 (최근 3개월 이상) ☞ 국민연금, 사학연금, 공무원연금 등 해당 기관에서 발급
	보험모집인 등 프리랜서	① 위촉증명서 ② 소득금액증명원 (최근 2개년) ☞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) 제출
	무직자	세무서 발행 소득신고없는 사실증명원 + 아래 ①~③ 중 택 1 ① 건강보험자격이 지역세대주인 경우 ☞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(최근 3개월 이상) ② 분양계약자가 국민연금 납부자일 경우 ☞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(최근 3개월) ③ 연말정산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(2021년) ☞ 국세청 홈텍스 발행분 또는 개별 카드사에서 발급

※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
1) 금리인하요구권 :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.

2) 대출계약 철회권 :

-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(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)까지 은행에 서면, 전화,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,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-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: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, 신규대출-만기연장 거절, 대출한도 축소,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3) 위법계약해지권 :

- 은행이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,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,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 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'법 위반사실을 안 날'부터 1년(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.)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-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,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.

4) 유의사항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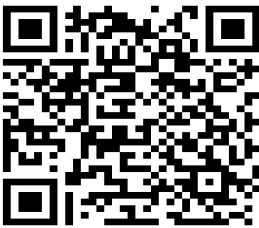
- 손님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- 대출거래 약정서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을경우, 대출 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/신용상의 불이익(압류, 경매등)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/신용상의 불이익(압류, 경매 등)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 -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 할 수 있습니다.
 -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* 자세한 사항은 취급영업점 또는 하나은행 고객센터(1599-222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▣ 하나은행 대전지점 (204 동) 대전 중구 대종로 481(대흥동)

전화 042-252-7800, 팩스 042-252-9818

차장 양의정(내선 208), 대리 박소은(내선 207)

비대면 계좌개설 QR 코드



▣ 하나은행 대전영업부 (205 동 3 층~26 층) 대전 중구 계룡로 820 (오류동)

전화 042-538-1111, 팩스 042-520-7959

차장 전영식(내선 7110), 계장 김아름(내선 7124)

비대면 계좌개설 QR 코드



▣ 하나은행 대흥동지점 (205 동 27 층~49 층) 대전 중구 중앙로 76 (대흥동)

전화 042-253-1111, 팩스 042-222-3285

차장 유광현(내선 101), 대리 최지효 (내선 115)

비대면 계좌개설 QR 코드



※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할인대상 및 준비 서류

구분	내용	준비서류
①다자녀가구	피보증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	○ 주민등록등본 또는 ○ 가족관계증명서
②신혼부부 (결혼예정자)	피보증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 (소득60백만원이하)	○ 혼인관계증명서 (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, 예식장 계약서)
③저소득가구	피보증인(소득을 합산하여 보증한도를 산정한 경우의 배우자 포함)의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인 자	○ 소득확인서류 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)
④다문화가구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 2 조제 1 호에 의거 피보증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 또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	○ 주민등록등본 ○ 장애인증명서(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·군·수·구청장이 발급) 또는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
⑤장애인가구	피보증인 또는 배우자, 피보증인(배우자포함)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	○ 주민등록등본 ○ 장애인증명서(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·군·수·구청장이 발급) 또는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
⑥국가유공자 가구	피보증인 또는 배우자, 피보증인(배우자포함)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, 독립유공자(유족) 확인원, 국가유공자(유족) 확인원, 보훈보상대상자(유족) 확인원, 5.18민주유공자(유족) 확인원, 특수임무유공자(유족) 확인원,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, 지원대상자(유족) 확인원으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	○ 독립유공자(유족)증 사본 또는 독립유공자(유족)확인원 ○ 국가유공자(유족)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 ○ 보훈보상대상자(유족)증 사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(유족)확인원 ○ 5.18민주유공자(유족)증 사본 또는 5.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원 ○ 특수임무유공자(유족)증 사본 또는 특수임무유공자(유족)확인원 ○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○ 지원대상자(유족) 확인원
⑦의사상자가구	피보증인 또는 배우자, 피보증인(배우자포함)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의사자 증서, 의사자 유족증, 의상자 증서, 의상자증으로 의상자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	○ 의사자(유족)증 사본 또는 의사자 증서 ○ 의상자(유족)증 사본 또는 의상자 증서
⑧한부모가구· 조손가구	피보증인이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거 지원되는 가족	○ 한부모가족증명서

※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 ※ 본 홍보물은 2022년 7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.
 [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-광고-4457호(2022.05.27)/은행홍보220527-0028] -5/5